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30----------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4. 7.1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 (2004. 7. 3)

2. 제안설명요지(장일룡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해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 (안 제16조의2)

○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함 (안 제13조, 제16조의 2)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안 별표3)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기타 복무사항 조례에 위임)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안(표준안)을 근거로 우선 개정 가능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토요전일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관련 문구(제13조, 16조)를 삭제하고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시행시기를 월2회와 전면실시로 구분 규정하되, 제16조의2의 월1회로 되어 있는 것을 전면 실시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시기를 2004. 7. 1부터로 하되 월2회 시행기간을 2005. 6. 30까지로 한정 규정하려는 것과

○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별표3)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늘리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사항이 정부방침에 의거 7. 1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을 기한이 지나서 소급개정하는 것은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지연 등의 사유는 있지만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임.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